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〔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(3공구)〕

□ 점검일시 : 2017.11.03 (금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한종수,전용현,최영준

○ 추락재해 예방(토목부) - 기존옹벽 깨기구간 안전난간의 고정장치가 탈락되어 있고, 토류판 설치가 미흡한 곳이 있으니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기 바라며, - 근로자 휴게실 주변 옹벽 상부에 적치되어 있는 현장 제작 일자형 사다리는 사용을 금지하고 반출하기 바람.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(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),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004(사다리)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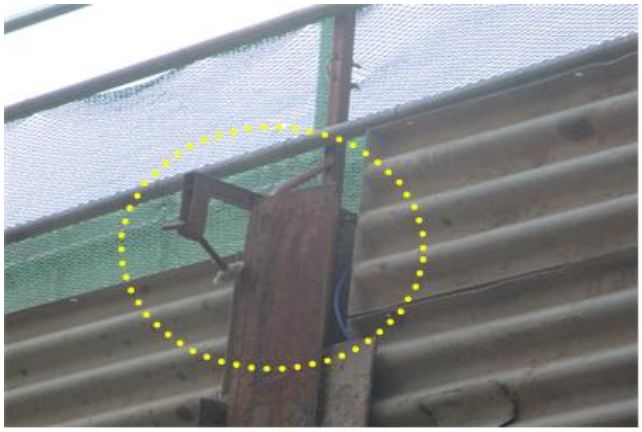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 - 중랑천 자전거도로 수문 난간 벽체 콘크리트 타설 작업장은 근로자가 하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가설계단 형태의 통로를 확보하기 바람.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8(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	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 - 옹벽깨기 구간 작업장으로 출입하기 위해 설치된 통로(계단)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상부 및 하부 고정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(계단)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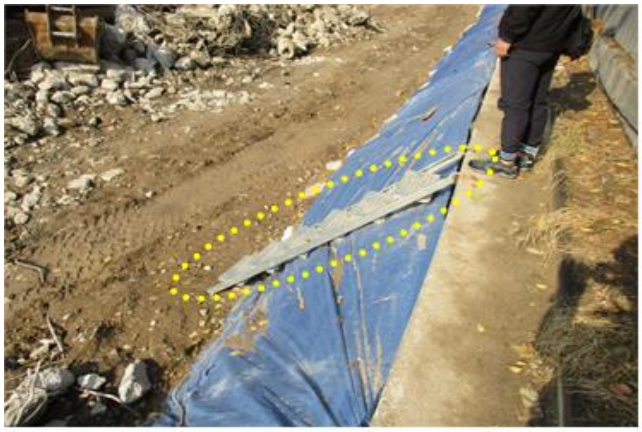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 - 기존 옹벽깨기 작업구간 근로자 진입시 인접 측구를 활용하여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측구 상부에 H빔이 적재되어 있고, 적재위치가 불안정하여 근로자 이동시 흔들림이 있으니 보완하기 바람.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	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 - 옹벽깨기 구간 살수용 수조탱크에 설치된 통로(사다리)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 ① 상부고정 ② 아웃트리거 설치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4조(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)	

○ 건설기계 안전(토목부)

- 중랑천 자전거도로 설치작업장의 레미콘믹서트럭은 근로자 협착 및 충돌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
  ① 복장을 갖춘 유도자 배치
  ② 유도자는 신호업무만 집중토록 조치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-29
  (건설기계)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토목부)

- 흙막이 설치 작업장은 향후 근로자가 하부에서 토류벽 설치 작업 시 낙하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으니, 상부 띠장에 적치된 강재 및 토사잔재를 제거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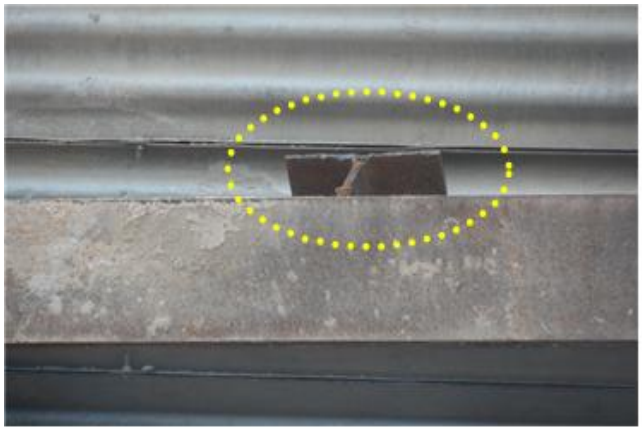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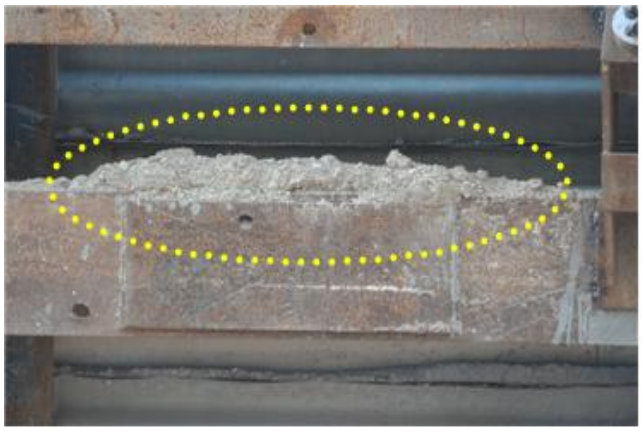
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 - 협력업체 콘테이너 상부에 부착된 투광등은 등 보호 및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손 부위 정비 및 내열강화 유리를 사용한 보호망 설치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0(투광등)	 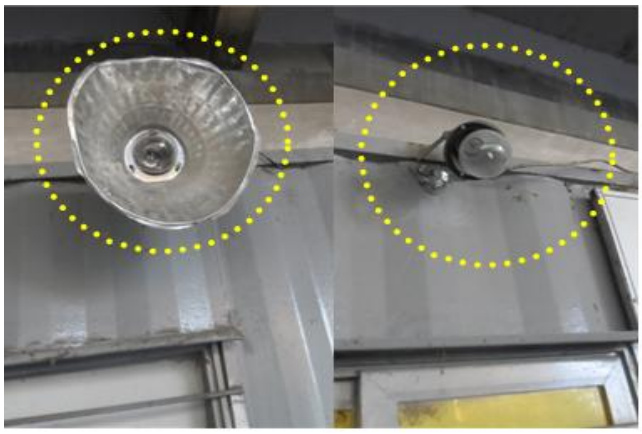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 - 흙막이 설치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용접기는 감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 ① 단자 보호 커버 설치 ② 자동전격방지기 내장 유무 확인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1 (용접작업 및 용접기)	
○ 감전재해 예방(토목부) - 가설창고 주변 분전함의 위치가 기존 옹벽에 걸쳐 있고 주변에 각종 자재들로 인하여 접근하기가 쉽지않으니, 유지관리 및 상황발생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분전반 위치를 조정하기 바라며, - 분전반 내부 충전부는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.	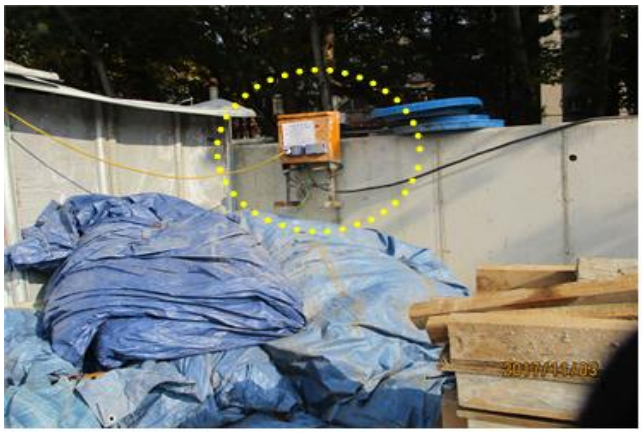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16(분전반)	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 - 흙막이 설치 작업장에서 고압살수기 연료공급용으로 사용중인 유류통은 화재예방을 위험물보관소로 이동하거나 소화기를 배치하기 바람.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P-49 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	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토목부) - 근로자 휴게실 주변의 가스용기는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잠금상태를 확인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기 바라며, 압력게이지가 노후되어 상태가 불량하니 교체하기 바라며, - 가설창고 주변에 드럼통이 외부에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노출되어 있어 화재위험이 있으니 위험물 보관소에 별도 보관하기 바람.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023(산소절단기 및 가스용기)	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옹벽깨기구간 공사장 구역을 구분하여 휀스 설치 등 시민이 공사장 안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 등), 제200조(접촉금지)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흙막이 설치 작업장에서 사용중인 물통은 유해위험물질을 보관한 통을 재사용하고 있어, 실질적으로 위험물질을 보관한 통과 혼동할 수 있으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거하고 물이라는 별도 표시를 부착하기 바람.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24
(위험물 보관소)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기존옹벽 깨기구간 구조물 깨기작업중으로 작업 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기 바라며, 콘크리트 분할 시 분진방지 대책을 시행하기 바람.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(분진의 흩날림 방지),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, 제39조(작업지휘자의 지정)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 - 옹벽깨기구간 임시방호벽(PE, 콘크리트) 일부 구간이 미설치되어 있으니 방호벽을 연속하여 설치하기 바라며, 임시방호벽은 차량 등 충격에 밀려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기 바람.	